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19가합587965 판결 [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권시영

피고1.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송봉섭

변론 종결2021. 11. 26.

판결 선고2022.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은 7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1)는 제약, 바이오 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약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양해각서 체결 및 보증금 지급

1) 원고와 피고들은 2018. 3. 5. 피고 회사의 미국 소재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양수도과 관련한 양해각서(이하 '1차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8. 10. 2. 위 양해각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본계약 체결일을 2019. 4. 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변경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양해각서

피고들은 E, NEW YORK, NY, USA에 소재한 F(이하 "대상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이며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소재한 피고 회사(이하 "대상회사의 한국자회사")의 대표이사로 해당 대상회사의 기존 주식 및 신규 발행할 주식을 양도하기를 희망하며 원고는 대상회사의 기존 주식 및 신규 발행 주식을 양수하기를 희망한다.

제2조(실사보증금 지급)

1. 본 양해각서 체결일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본계약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대상회사의 실사 실행에 대한 보증금 일금 오억원(₩500,000,000)(이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본계약 체결시 본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되거나 본계약의 계약금이 지급될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본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평가 가액"의 산정이 완료된 이후 원고와 피고들의 협의를 통해 대상회사의 신규 발행 주식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본계약의 체결 시점은 본 양해각서 체결 후 2개월 이내(이하 "본계약 체결일")에 완료하기로 한다.

제8조(양해각서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조 2항의 방법에 의거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 또는 피고들 일방으로 인해 제4조의 본계약 체결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조 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8. 8. 6. 피고 C이 보유한 발모제 기술의 특허전용실시권 양도와 관련한 양해각서(이하 '2차 양해각서'라 하고, 1차 및 2차 양해각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양해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양해각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당 발모제(K) 기술에 대해 모든 권리를 소유(특허출원 중)하고 있으며, 원고는 발모제(K)에 대해 특허 전용 실시권에 대한 권리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원고와 피고 C은 발모제(K)에 대한 권리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실사보증금 지급)

1. 본 양해각서 체결일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본계약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등의 실사 실행에 대한 보증금 일금 이억원(₩200,000,000)(이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본계약 체결시 본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되거나 본계약의 계약금이 지급될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계약 체결시 원고와 피고 C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본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C은 기술평가가 완료된 이후 원고와 피고 C의 협의를 통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본계약의 체결 시점은 본 양해각서 체결 후 2개월 이내(이하 "본계약 체결일")에 완료하기로 한다.

제8조(양해각서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조 2항의 방법에 의거 본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 또는 피고들 일방으로 인해 제4조의 본계약 체결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조 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시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3) 원고는 2018. 3. 5. 피고들에게 1차 양해각서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8. 10. 피고 C에게 2차 양해각서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피고들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과 2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피고 C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서 예정한 본계약 체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제8조 제1항 나.호, 제8조 제2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양해각서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각 양해각서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해각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 따라 임상시험약 원료를 만들고, 임상시험을 준비하며, 미국에서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본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사용내역, 실사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진이 교체되기에 이르자 일방적으로 피고들과 연락을 두절한 뒤 피고들에 대한 추가 투자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 따른 본계약 체결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제8조 제2항은 '일방 당사자가 본조 1항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상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제8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양해각서에 정한 본계약 체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들이 위 각 양해각서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2차 양해각서 대상이 된 발모제 기술과 관련하여 2018. 7. 20.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8. 16. 출원취하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그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각 양해각서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해각서 제8조 제2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원

판사배온실

판사구현정

1) 그 상호가 B 주식회사에서 2020. 3. 3. I 주식회사, 2020. 3. 27. 주식회사 J로 각 변경되었고,

2020. 4. 3.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다.